

인천광역시 영종구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결	기 관 의 장

제 3 호

2026년 7월 8일 수요일

차 례

공 고

- 인천광역시영종구공고 제2026-1319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영종구공고 제2026-1320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영종구공고 제2026-1321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영종구공고 제2026-1322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영종구공고 제2026-1323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영종구

편집 : 홍보체육실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1319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영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7월 8일
인천광역시영종구청장

인천광역시 영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이 유

-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국·부서명 정비 및 분장사무 정비

□ 주 요 내 용

가. 기구 조정 (안 제3조 ~ 제7조)

- 명칭변경

- 국(4) : 경제산업국 → 공항경제국, 주민복지국 → 주민생활국,
도시안전국 →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 건설안전교통국
- 실·과(4) : 홍보체육실 → 홍보미디어실, 법무감사실 → 감사실,
문화관광과 → 문화관광체육과, 차량민원과 → 대중교통과

나. 국단 설치에 따른 소속부서 편제 및 소관사무 규정 (안 제8조 ~ 제12조)

- 행정국 : 총무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 공항경제국 : 경제지원과, 문화관광체육과, 평생교육과, 도시농업과,
해양수산과
- 주민생활국 :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가족복지과,
자원순환과
- 도시관리국 :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환경위생과
- 건설안전교통국 : 건설과, 안전관리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 의 건 제 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26년 7월 10일까지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참조 : 기획예산실)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실(기획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안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기타 참고사항 등

※ 「인천광역시 영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기간 단축

※ 의견제출 및 문의 전화번호

- ▷ 주 소 : (우22315) 인천광역시 영종구 하늘중앙로 201 (중산동)
인천광역시 영종구 기획예산실(기획팀)
- ▷ 전 화 : 032)760-7033(FAX 032)760-7039)

인천광역시 영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영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법무감사실, 홍보체육실”을 “홍보미디어실, 감사실”로, “경제산업국, 주민복지국, 도시안전국, 교통환경국”을 “공항경제국,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건설안전교통국”으로 한다.

제4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제 및 소송에 관한 업무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6조 및 제5조로 한다.

제5조(중전의 제6조)의 제목 “(홍보체육실)”을 “(홍보미디어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홍보체육실장”을 “홍보미디어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중전의 제5조)의 제목 “(법무감사실)”을 “(감사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무감사실장”을 “감사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문화관광과, 평생교육과”를 “세무1과, 세무2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8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한다.

12. 지방세 부과 및 징수

13. 개별주택가격평가

제9조의 제목 “(경제산업국)”을 “(공항경제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항경제국에 경제지원과, 문화관광체육과, 평생교육과, 도시농업과, 해양수산과를 둔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산업국장”을 “공항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문화예술진흥

9. 문화유산 보호·관리

10.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

11. 관광특화사업 및 개발

12. 각종 체육진흥 사업

13. 건전생활 및 체육진흥

14.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15. 학교교육 지원 및 청소년 건전 육성

제10조의 제목 “(주민복지국)”을 “(주민생활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민복지국”을 “주민생활국”으로, “가족복지과”를 “가족복지과, 자원순환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복지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청소 및 재활용 업무에 관한 사항

제11조의 제목 “(도시안전국)”을 “(도시관리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시관리국에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환경위생과를 둔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안전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
8. 환경보전 및 환경분쟁 조정
9. 대기환경업무에 관한 사항
10. 음식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11. 공중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제12조의 제목 “(교통환경국)”을 “(건설안전교통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건설안전교통국에 건설과, 안전관리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를 둔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환경국장”을 “건설안전교통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설행정 종합계획 수립
2. 건설 사업에 따른 보상 협의
3. 도로 및 가로등 관리
4. 하수도 및 소하천 관리

5. 안전정책 총괄·조정
6. 인적·사회적 재난 대응 총괄
7. 산업재해안전관리
8.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9. 민방위대 운영 및 시설관리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진료원”을 각각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 무료 법률·세무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법무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영종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 중 “법무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영종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제9조제2항 및 제17조제3항 중 “도시안전국장”을 각각 “건설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실·단·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실, 법무감사실, 홍보체육실, 미래사업추진단, 행정국, <u>경제산업국</u> , 주민복지국, 도시안전국, <u>교통환경국</u> 을 둔다.	제3조(실·단·국의 설치) ----- ----- <u>홍보미디어실</u> , <u>감사실</u> ----- ----- <u>공항공제국</u> , <u>주민생활국</u> , <u>도시관리국</u> , <u>건설안전교통국</u> ----- -.
제4조(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략) <u><신설></u>	제4조(기획예산실) ----- -----. 1. ~ 6. (현행과 같음) <u>7. 법제 및 소송에 관한 업무</u>
제5조(법무감사실) <u>법무감사실</u> 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략) <u>5. 법제 및 소송에 관한 업무</u>	제6조(<u>감사실</u>) <u>감사실장</u> ----- -----. 1. ~ 4. (현행과 같음) <u><삭제></u>
제6조(<u>홍보체육실</u>) <u>홍보체육실장</u>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략) <u>7. 각종 체육진흥 사업</u> <u>8. 건전생활 및 체육진흥</u>	제5조(<u>홍보미디어실</u>) <u>홍보미디어실장</u> ----- -----. 1. ~ 6. (현행과 같음) <u><삭제></u> <u><삭제></u>
제8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총무과, 재무과, <u>문화관광과</u> , <u>평생교육과</u> , 민원지적과를 둔다. ②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1. (생략)	제8조(행정국) ① ----- ----- <u>세무1과</u> , <u>세무2과</u> ----- -----. ② ----- -. 1. ~ 11. (현행과 같음)

12. 문화예술진흥

13. 문화유산 보호·관리

14.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

15. 관광특화사업 및 개발

16.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17. 학교교육 지원 및 청소년 건전
육성

18. ~ 21. (생략)

제9조(경제산업국) ① 경제산업국에
경제지원과, 도시농업과, 해양수산
과, 세무1과, 세무2과를 둔다.

② 경제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
장한다.

1. ~ 7. (생략)

<신설>

<신설>

<신설>

8. ~ 10. (생략)

11. 지방세 부과 및 징수

12. 개별주택가격평가

<신설>

<신설>

<신설>

12. 지방세 부과 및 징수

13. 개별주택가격평가

<삭제>

<삭제>

<삭제>

<삭제>

14. ~ 17. (현행 제18호부터 제21호
까지와 같음)

제9조(공항경제국) ① 공항경제국에
경제지원과, 문화관광체육과, 평생
교육과, 도시농업과, 해양수산과를
둔다.

② 공항경제국장-----

1. ~ 7. (현행과 같음)

8. 문화예술진흥

9. 문화유산 보호·관리

10.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

16. ~ 18. (현행 제8호부터 제10호
까지와 같음)

11. 관광특화사업 및 개발

12. 각종 체육진흥 사업

13. 건전생활 및 체육진흥

14.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15. 학교교육 지원 및 청소년 건전
육성

제10조(주민복지국) ① 주민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
인과, 가족복지과를 둔다.

② 주민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
장한다.

1. ~ 8. (생략)

<신설>

제11조(도시안전국) ① 도시안전국에
도시계획과, 안전관리과, 건설과,
건축과를 둔다.

② 도시안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
장한다.

1. ~ 4. (생략)

5. 안전정책 총괄·조정

6. 인적·사회적 재난 대응 총괄

7. 산업재해안전관리

8.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9. 민방위대 운영 및 시설관리

10. 건설행정 종합계획 수립

11. 건설 사업에 따른 보상 협의

12. 도로 및 가로등 관리

13. 하수도 및 소하천 관리

14. · 15. (생략)

<신설>

제10조(주민생활국) ① 주민생활국--

---- 가족복지과, 자원순환과----

② 주민생활국장-----

1. ~ 8. (현행과 같음)

9. 청소 및 재활용 업무에 관한 사
항

제11조(도시관리국) ① 도시관리국에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환경위생과를 둔다.

② 도시관리국장-----

1. ~ 4. (현행과 같음)

5.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6. · 7. (현행 제14호 및 제15호와 같
음)

8. 환경보전 및 환경분쟁 조정

<신 설>

<신 설>

<신 설>

제12조(교통환경국) ① 교통환경국에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 공원녹지
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를 둔다.

② 교통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
장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1. ~ 5. (생 략)

6.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

7. 환경보전 및 환경분쟁 조정

8. 대기환경업무에 관한 사항

9. 음식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10. 공중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11. 청소 및 재활용 업무에 관한 사
항

제15조(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

9. 대기환경업무에 관한 사항

10. 음식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11. 공중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제12조(건설안전교통국) ① 건설안전
교통국에 건설과, 안전관리과, 교통
행정과, 대중교통과를 둔다.

② 건설안전교통국장-----
---.

1. 건설행정 종합계획 수립

2. 건설 사업에 따른 보상 협의

3. 도로 및 가로등 관리

4. 하수도 및 소하천 관리

5. 안전정책 총괄·조정

6. 인적·사회적 재난 대응 총괄

7. 산업재해안전관리

8.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9. 민방위대 운영 및 시설관리

10. ~ 14. (현행 제1호부터 제5호까
지와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제15조(소장 등) ① -----

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명
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
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보건지소
장과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명
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
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6조(업무) ① (생략)

② 보건진료원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소
관 사무를 수행한다.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

② -----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

제16조(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

【 지방자치법 】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71호, 2026. 3. 5., 일부개정]

-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5호, 2026. 6. 23., 일부개정]

-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군·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두어야 한다.
-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③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영종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기구 개편에 따른 개정으로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

4. 작성자 :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부서용]

부서별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기타 문제점		
부서별(실·과) 의견			
협의개요	실·과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주민용]

주민 의견수렴서

의견제출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의견제출 내용			
제출일자 : 년 월 일 제출인 :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1320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영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7월 8일

인천광역시영종구청장

인천광역시 영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개 정 이 유

-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국별 통솔범위 · 부서명 정비 및 분장사무의 조정

□ 주 요 내 용

- 가. 국·단장 및 부서장의 직급 규정(안 제7조~제11조)
- 나. 구 본청 부서별 분장사무 정비(안 별표 1)

□ 의 견 제 출

-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26년 7월 10일까지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참조 : 기획예산실)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실(기획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안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기타 참고사항 등

※「인천광역시 영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기간 단축

※ 의견제출 및 문의 전화번호

- ▷ 주 소 : (우22315) 인천광역시 영종구 하늘중앙로 201 (중산동)
인천광역시 영종구 기획예산실(기획팀)
- ▷ 전 화 : 032)760-7033(FAX 032)760-7039)

인천광역시 영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영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제5조 및 제4조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5조)의 제목 “(홍보체육실)”을 “(홍보미디어실)”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의 제목 “(법무감사실)”을 “(감사실)”로 한다.

제7조 중 “총무과장·재무과장·문화관광과장·평생교육과장”을 “총무과장·재무과장·세무1과장·세무2과장”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경제산업국)”을 “(공항경제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도시농업과장”을 “문화관광체육과장·평생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시농업과장”으로, “지방행정사무관·지방해양수산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세무1과장·세무2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행정사무관·지방해양수산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주민복지국)”을 “(주민생활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을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하고, 제10조를 제11조로 하며,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도시관리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계획과장·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

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1조(중전의 제10조)의 제목 “(도시안전국)”을 “(건설안전교통국)”으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과장·건설과장·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안전관리과장”을 “건설과장·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안전관리과장·대중교통과장”으로 한다.

별표 1의 기획예산실 분장사무 중 제25호를 삭제하고, 제26호부터 제39호까지를 각각 제25호부터 제38호까지로 하며, 제39호부터 제4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9. 법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 40. 조례·규칙, 훈령·예규의 제·개정 및 폐지
- 41.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 42. 고시·공고, 훈령·예규 등 중요문서 심사
- 43. 행정법규상담실 운영
- 44. 소송사무의 처리 및 조정
- 45.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수행자 지정
- 46. 고문변호사 운영
- 47.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 48. 납세자보호관에 관한 사무

별표 1의 홍보체육실을 홍보미디어실로 하고, 그 분장사무 중 제42호부터 제52호까지를 삭제하며, 제53호를 제42호로 한다.

별표 1의 법무감사실을 감사실로 하고, 그 분장사무 중 제15호를 삭제하고, 제16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제15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며, 제18호부터 제27호까지를 삭제하고, 17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7. 고충민원 업무 처리
- 18. 특이민원 업무 처리
- 19. 갈등민원 조정 업무

별표1의 미래사업추진단 분장사무 중 제8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제8호 및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3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15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한다.

- 8. 공약사항 관리
- 14. 시설관리공단 설립전 대행사업 최적화 방안 수립(위탁·용역 타당성 검토 및 총괄계획 수립 등)

별표 1의 경제지원과 분장사무 중 제6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60. 그 밖에 공항경제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별표 1의 문화관광과를 문화관광체육과로 하고, 그 분장사무 중 제42호를 삭제하며, 제43호를 제42호로 하고, 제43호부터 제 5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3. 각종 체육진흥사업 추진
- 44. 공공체육시설 관리
- 45.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 46. 신고 체육시설업 처리 및 지도
- 47. 체육진흥기금 관리 및 운영
- 48. 생활체육회 지원
- 49. 체육대회 운영 및 지원
- 50. 생활, 건강 체육교실 운영
- 51. 수상레저기구 등록에 관한 사항
- 52. 체육센터 운영 및 지원
- 53. 수상레저사업 관련 업무

별표 1의 평생교육과 분장사무 중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2. 도서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별표 1의 복지정책과 분장사무 중 제4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3. 그 밖에 주민생활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별표 1의 도시계획과 분장사무 중 제4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4. 그 밖에 도시관리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별표 1의 건설과 분장사무 중 제 5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8. 그 밖에 건설안전교통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별표 1의 교통행정과 분장사무 중 제 33호를 삭제한다.

별표 1의 차량민원과를 대중교통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법무감사실) (생략)	제5조(감사실) (현행과 같음)
제5조(홍보체육실) (생략)	제4조(홍보미디어실) (현행과 같음)
제7조(행정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u>총무과장·재무과장·문화관광과장·평생교육과장</u> 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u>민원지적과장</u> 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조(행정국) ----- ----- <u>총무과장·재무과장·세무1과장·세무2과장</u> ----- ----- ----- -----.
제8조(경제산업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경제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으로, <u>도시농업과장</u> 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으로, <u>해양수산과장</u> 은 <u>지방행정사무관·지방해양수산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u> 으로, <u>세무1과장·세무2과장</u> 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8조(공항경제국) ----- ----- ----- <u>문화관광체육과장·평생교육과장</u> 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u>도시농업과장</u> ----- <u>지방행정사무관·지방해양수산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u> ----- -----.
제9조(주민복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생활보장과장·노인장애인과장·가족복지과장은 <u>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u> 으로 보한다.	제9조(주민생활국) ----- ----- ----- ----- <u>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u> 으로, <u>자원순환과장</u> 은 <u>지방행정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u> ----- -----.

<신 설>

제10조(도시안전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계획과장·건설과장·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안전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1조(교통환경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차량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0조(도시관리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계획과장·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1조(건설안전교통국) -----
----- 건설과장·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으로, 안전관리과장·대중교통과장
-----.

<삭 제>

[별표 1] 구 본청 실·과 분장사무

실과명	분 장 사 무
기획예산실	1. ~ 24. (생 략) 25. 공약사항 관리 26. ~ 39.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홍보체육실	1. ~ 41. (생 략) 42. 각종 체육진흥사업 추진 43. 공공체육시설 관리 44.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45. 신고 체육시설업 처리 및 지도 46. 체육진흥기금 관리 및 운영 47. 생활체육회 지원 48. 체육대회 운영 및 지원 49. 생활, 건강 체육교실 운영 50. 수상레저기구 등록에 관한 사항 51. 체육센터 운영 및 지원 52. 수상레저사업 관련 53. (생 략)
법무감사실	1. ~ 14. (생 략) 15. 고충민원 업무 처리 16. ~ 17. (생 략) 18. 법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19. 조례·규칙, 훈령·예규의 제·개정 및 폐지 20.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21. 고시·공고, 훈령·예규 등 중요문서 심사 22. 행정법규상당실 운영 23. 소송사무의 처리 및 조정 24.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수행자 지정 25. 고문변호사 운영 26.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27. 납세자보호관에 관한 사무 <신 설> <신 설> <신 설>
미래사업 추진단	1. ~ 7. (생 략) <신 설> 8. ~ 12. (생 략) <신 설> 13. ~ 14. (생 략)
경제지원과	1.~ 59 .(생 략) 60. 그 밖에 경제산업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별표 1] 구 본청 실·과 분장사무

실과명	분 장 사 무
기획예산실	1. ~ 24. (현행과 같음) <삭 제> 25. ~ 38. (현행 제26호~제39호와 같음) 39. 법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40. 조례·규칙, 훈령·예규의 제·개정 및 폐지 41.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42. 고시·공고, 훈령·예규 등 중요문서 심사 43. 행정법규상당실 운영 44. 소송사무의 처리 및 조정 45.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수행자 지정 46. 고문변호사 운영 47.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48. 납세자보호관에 관한 사무
홍보미디어실	1. ~ 41.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42. (현행 제53호와 같음)
감사실	1. ~ 14. (현행과 같음) <삭 제> 15. ~ 16. (현행 제16호~제17호와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17. 고충민원 업무 처리 18. 특이민원 업무 처리 19. 갈등민원 조정 업무
미래사업 추진단	1. ~ 7. (현행과 같음) 8. 공약사항 관리 9. ~ 13. (현행 제8호~제12호와 같음) 14. 시설관리공단 설립전 대행사업 최적화 방안 수립(위탁·용역 타당성 검토 및 총괄계획 수립 등) 15. ~ 16. (현행 제13호~제14호와 같음)
경제지원과	1. ~ 59. (현행과 같음) 60. 그 밖에 공항경제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성과명	분 장 사 무	성과명	분 장 사 무
문화관광과	1. ~ 41. (생 략) 42. 도서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3.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문화관광체육과	1. ~ 41. (현행과 같음) <삭 제> 42. (현행 제43호와 같음) 43. 각종 체육진흥사업 추진 44. 공공체육시설 관리 45.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46. 신고 체육시설업 처리 및 지도 47. 체육진흥기금 관리 및 운영 48. 생활체육회 지원 49. 체육대회 운영 및 지원 50. 생활, 건강 체육교실 운영 51. 수상레저기구 등록에 관한 사항 52. 체육센터 운영 및 지원 53. 수상레저사업 관련 업무
평생교육과	1. ~ 31. (생 략) <신 설>	평생교육과	1. ~ 31. (현행과 같음) 32. 도서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복지정책과	1.~ 42. (생 략) 43. 그 밖에 주민복지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복지정책과	1. ~ 42. (현행과 같음) 43. 그 밖에 주민생활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도시계획과	1.~ 43. (생 략) 44. 그 밖에 도시안전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도시계획과	1. ~ 43. (현행과 같음) 44. 그 밖에 도시관리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건설과	1.~ 57. (생 략) <신 설>	건설과	1.~ 57. (현행과 같음) 58. 그 밖에 건설안전교통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교통행정과	1.~ 32. (생 략) 33. 그 밖에 교통환경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교통행정과	1.~ 32. (현행과 같음) <삭 제>
차량민원과	1. ~ 31. (생 략)	대중교통과	1. ~ 31. (현행과 같음)

[부서용]

부서별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기타 문제점		
부서별(실·과) 의견			
협의개요	실·과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주민용]

주민 의견수렴서

의견제출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의견제출 내용			
제출일자 : 년 월 일 제출인 :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1321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영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7월 8일
인천광역시영종구청장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이 유

○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

☐ 주 요 내 용

가. 총 정원 : 765명 → 772명 (증 7명) (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 745명 → 752명 (증 7명)

나. 종류별 정원채정 기준(비율) 조정 (안 별표 1)

구 분	일반직	별정직.정무직
조정 전	99.5% 이상	0.5% 이내
조정 후	99% 이상	1% 이내

다. 직급별 정원채정 기준(비율) 조정 (안 별표 2)

구분	5급 상당 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조정 전	-	50%	50%	-	-
조정 후	-	34% 이내	50% 이내	16% 이상	-

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안 별표 3)

- 일반직공무원의 정원 : 762명 → 765명 (증 3명)

- 일반직 6급 이하 : 713명 → 716명 (증 3명)

-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 : 2명 → 6명 (증 4명)

□ 의 건 제 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26년 7월 10일까지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참조 : 기획예산실)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실(기획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안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기타 참고사항 등

※ 「인천광역시 영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기간 단축

※ 의견제출 및 문의 전화번호

- ▷ 주 소 : (우22315) 인천광역시 영종구 하늘중앙로 201 (중산동)
인천광역시 영종구 기획예산실(기획팀)
- ▷ 전 화 : 032)760-7033(FAX 032)760-7039)

인천광역시 영종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65명이며”를 “772명이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745명”을 “752명”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원의 총수) 인천광역시 영종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u>765명</u> 이 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u>745명</u> 2. (생략)	제2조(정원의 총수) ----- ----- <u>772명</u> 이며 -----. 1. ----- <u>752명</u> 2. (현행과 같음)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 기준

구 분	일반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99% 이상	1% 이내

비 고 :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 기준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 이내	6.5% 이내	23.5% 이내	34% 이내	31% 이내	3.6% 이상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3% 이내	97% 이상	8% 이내	92% 이상

3. 별정직공무원

구분	5급 상당 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율	-	34% 이내	50% 이내	16% 이상	-

비고 :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채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별 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단위: 명)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 기 구	직속기관 (보건소)	동
총 계		772	-			
정무직계		1	-			
	구청장	1	1	-	-	-
일반직계		765	-			
	3급	1	1	-	-	-
	4급	6	5	-	1	-
	5급	42	28	2	6	6
	6급 이하 계	716				
별정직계		6	-			
	6급 상당 이하 계	6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5호, 2026. 6. 23., 일부개정]

제5장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를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 및 별표 3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기구 및 정원의 변동

- 1) 기구 변경 : 중 3팀
- 2) 정원 변경 : 일반직공무원 3명, 별정직 공무원 4명 증원
(6급 3명, 7급 2명, 8급 1명, 9급 1명)

나. 추계 결과 (2026년도 소요예산)

(단위 : 명, 원)

구 분	소요비용	산출근거						비고
		내역	단가	인원	비율 등	월(회) 수	계	
총 계	158,984,600							
1. 인건비	151,909,600							
가. 기본급	124,830,000							
		○ 6급(22호봉)	4,511,500	3		5	67,672,500	
		○ 7급(13호봉)	3,425,300	2		5	34,253,000	
		○ 8급(6호봉)	2,412,900	1		5	12,064,500	
		○ 9급(3호봉)	2,168,000	1		5	10,840,000	
나. 정근수당	0	○ 정근수당	23,953,600				0	25%평균
다. 정액수당	27,079,600							
1) 가족수당	3,850,000	○ 배우자	40,000	7	1.0	5	1,400,000	
		○ 존속	20,000	7	1.0	5	700,000	
		○ 자녀	50,000	7	1.0	5	1,750,000	
2) 정근수당가산금	2,650,000	○ 20년~25년미만	110,000	3		5	1,650,000	
		○ 10년~15년미만	60,000	2		5	600,000	
		○ 5년~10년미만	50,000	1		5	250,000	
		○ 5년 미만	30,000	1		5	150,000	
3) 정액급식비	5,600,000	○ 일반직	160,000	7		5	5,600,000	
4) 명절휴가비	14,979,600	○ 명절휴가	23,953,600	7		1	14,979,600	60%
2. 직무수행경비	7,075,000							
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750,000	○정원증가	150,000	1		5	750,000	평생교육 도시농업
나. 직급보조비	6,325,000							
		○ 6급	185,000	3		5	2,775,000	
		○ 7급	180,000	2		5	1,800,000	
		○ 8~9급	175,000	2		5	1,750,000	

구 분	소요비용	산출근거						비고
		내역	단가	인원	비율 등	월(회) 수	계	
3. 포상금	0							
가. 성과상여금	0							
		○ 6급	3,508,764	3	1.30	0	0	A등급
		○ 7급	2,983,251	2	1.30	0	0	A등급
		○ 8급	2,478,066	1	1.30	0	0	A등급
		○ 9급	2,107,111	1	1.30	0	0	A등급

※ 수당 중 위험근무, 대우공무원, 관리업무, 특수업무, 민원업무, 전산업무, 장려, 의회사무, 의료업무, 동근무, 사회복지업무, 초과근무 등 제수당은 개인별 격차가 광범위하고 산발적이므로 추계하지 않음

다. 재원조달 방안 : 자체수입

3.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계
세입			해	당	없	음	
세출		158,985	429,401	444,430	459,985	476,085	1,968,886
1. 인건비		151,910	384,061	397,503	411,416	425,815	1,770,705
	가. 기본급	124,830	310,077	320,930	332,162	343,788	1,431,787
	나. 정근수당	-	12,920	13,372	13,840	14,325	54,457
	다. 정액수당	27,080	61,064	63,201	65,413	67,703	284,461
2. 직무수행경비		7,075	16,980	17,574	18,189	18,826	78,645
	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750	1,800	1,863	1,928	1,996	8,337
	나. 직급보조비	6,325	15,180	15,711	16,261	16,830	70,308
3. 포상금(성과상여금)		-	28,360	29,353	30,380	31,443	119,536
재원조달		158,985	429,401	444,430	459,985	476,085	1,968,886
자 체 수 입	소계	158,985	429,401	444,430	459,985	476,085	1,968,886
	지방세	158,985	429,401	444,430	459,985	476,085	1,968,886
	세외수입	-	-	-	-	-	-

※ 상승률은 3.5%(2026년 공무원임금인상률)로 가정함

4. 작성자 :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부서용]

부서별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기타 문제점		
부서별(실·과) 의견			
협의개요	실·과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1322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영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7월 8일
인천광역시영종구청장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개 정 이 유

-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 사항 반영

□ 주 요 내 용

가.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표 변경 (안 별표)

- 총 정원 : 765명 → 772명 (증 7명)
 - 1) 본 청 : 572명 → 582명 (증 10명)
 - 2) 의 회 : 20명 (변동 없음)
 - 3) 보건소 : 60명 (변동 없음)
 - 4) 동 : 113명 → 110명 (감 3명)

□ 의 견 제 출

-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26년 7월 10일까지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참조 : 기획예산실)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실(기획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안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기타 참고사항 등

※「인천광역시 영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기간 단축

※ 의견제출 및 문의 전화번호

▷ 주 소 : (우22315) 인천광역시 영종구 하늘중앙로 201 (중산동)

인천광역시 영종구 기획예산실(기획팀)

▷ 전 화 : 032)760-7033(FAX 032)760-7039)

인천광역시 영종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인천광역시 영종구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표

(단위: 명)

직렬별 \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보건소	동
총 계	772	582	20	60	110
정무직 계	1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765	575	20	60	110
3급 소계	1	1			
부이사관	1	1			
4급 소계	6	5		1	
서기관	3	3			
과학기술서기관	1			1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2	2			
5급 소계	42	28	2	6	6
행정	13	11	2		
의무	3			3	
행정·사회복지	10	4			6
행정·공업	1	1			
행정·농업	1	1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6	6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행정·녹지·시설	1	1			
행정·보건·환경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2			2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1			1	
6급 소계	165	138	4	10	13
행정	61	53	3		5
세무	8	8			
사회복지	5	5			
공업	1	1			
농업	1	1			
녹지	2	2			
보건	1	1			
시설	10	10			
행정·세무	6	5			1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17	11			6
행정·공업	2	2			

기관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보건소	등
행정·농업	2	2			
행정·녹지	2	2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보건	3	2		1	
행정·환경	5	5			
행정·시설	21	21			
행정·방송통신	1	1			
보건·간호	6			6	
행정·공업·방재안전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3			3	
운전	3	2	1		
사무운영	2	1			1
7급 소계	248	196	8	17	27
행정	97	73	7		17
세무	14	14			
전산	4	4			
사회복지	24	14			10
공업	4	4			
농업	1	1			
녹지	4	4			
해양수산	2	2			
보건	2	1		1	
간호	3			3	
보건진료	1			1	
환경	4	4			
시설	24	24			
방송통신	1	1			
행정·세무	3	3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9	9			
행정·공업	1	1			
행정·농업	2	2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4	4			
행정·시설	9	9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보건·환경	2	2			
행정·시설·방재안전	2	2			
농업·수의	1	1			
녹지·시설	2	2			

기관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보건소	등
보건·의료기술	2			2	
보건·간호	5			5	
보건·의료기술·간호	4			4	
운전	9	8		1	
건축운영	1	1			
통신운영	1	1			
전기운영	1	1			
사무운영	1		1		
8급 소계	227	158	4	21	44
행정	91	68	4		19
세무	6	6			
전산	2	2			
사회복지	25	12			13
공업	1	1			
농업	3	3			
녹지	2	2			
해양수산	1	1			
보건	6	3		3	
의료기술	1			1	
간호	14	1		7	6
환경	4	4			
시설	15	15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2	2			
행정·세무	1	1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15	9			6
행정·공업	2	2			
행정·녹지	1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보건	2	2			
행정·환경	3	3			
행정·시설	4	4			
행정·방재안전	2	2			
전산·세무	1	1			
공업·시설	1	1			
녹지·시설	1	1			
보건·간호	6			6	
간호·보건진료	1			1	
시설·방재안전	1	1			
행정·공업·시설	1	1			

기관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보건소	등
행정·보건·간호	1			1	
행정·의료기술·간호	1			1	
행정·시설·방재안전	3	3			
운전	4	3		1	
9급 소계	76	49	2	5	20
행정	29	16			13
세무	3	3			
사회복지	9	4			5
숙기	2		2		
농업	1	1			
녹지	2	2			
해양수산	1	1			
보건	2	2			
의료기술	1			1	
환경	1	1			
시설	6	6			
방송통신	1	1			
행정·사회복지	5	4			1
행정·농업	1	1			
행정·녹지	2	2			
행정·보건	2	1		1	
행정·환경	1	1			
행정·방재안전	1	1			
보건·의료기술	3			3	
행정·농업·녹지	1	1			
행정·시설·방재안전	1	1			
운전	1				1
별정직 계	6	6			
별정6급상당 계	2	2			
별정(비서요원)	1	1			
행정·별정(비서요원)	1	1			
별정7급상당 계	3	3			
별정(비서요원)	1	1			
행정·별정(비서요원)	2	2			
별정8급상당 계	1	1			
별정(비서요원)	1	1			

[부서용]

부서별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기타 문제점		
부서별(실·과) 의견			
협의개요	실·과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주민용]

주민 의견수렴서

의견제출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의견제출 내용			
제출일자 : 년 월 일 제출인 :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1323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영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7월 8일
인천광역시영종구청장

인천광역시 영종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개 정 이 유

- 부서별 사무조정에 따른 전결처리사항 정비

□ 주 요 내 용

- 가. 구 본청의 사무전결사항 개정 (안 별표 1)
 - 부서명 변경 및 업무 조정에 따른 사무전결사항 개정

□ 의 견 제 출

-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26년 7월 10일까지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참조 : 기획예산실)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실(기획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안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기타 참고사항 등

※「인천광역시 영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기간 단축

※ 의견제출 및 문의 전화번호

- ▷ 주 소 : (우22315) 인천광역시 영종구 하늘중앙로 201 (중산동)

인천광역시 영종구 기획예산실(기획팀)

- ▷ 전 화 : 032)760-7033(FAX 032)760-7039)

인천광역시 영종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영종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기획예산실의 단위사무 중 제31호를 삭제하고, 제32호부터 제42호까지를 각각 제31호부터 제41호까지로 하며, 제42호부터 제5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서명	단위사무명	담당자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실무급	담당급				
기획예산실	42. 법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기안			○	
	43. 법제자료 조사	기안		○			
	44. 자치법규의 제·개정 폐지 및 공포						
	가. 조례(안) 의결사항 및 규칙	기안		○			
	사전보고						
	나. 조례·규칙·훈령·예규 심사	기안		○			
	다. 입법예고(안) 심사	기안		○			
	라. 조례·규칙·훈령·예규 제·개정	기안					○
	및 폐지 공포						
	45.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가.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기안					○
	나. 결과보고	기안					○
	46. 구 자치법규 및 예규문서, 법무	기안		○			
	관계자료 편찬						
	47. 법령 및 자치법규 질의 해석		기안	○			
	48. 대한민국법령집 및 자치법규집 관리	기안		○			
	및 확인						
	49. 행정법규상담실 운영	기안		○			
	50. 소송사건의 심사처리 및 수행						
	가. 제소·피소						
	(1) 민사(가합 : 주요사건)	기안				○	
	(2) 민사(가단, 가합, 가소)	기안		○			
	(3) 행정	기안		○			
	나. 소송위임	기안		○			
	다.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수행자	기안		○			
	지정						
	라. 소송사건 자료수집	기안	○				
	마. 답변서(준비서면) 제출	기안		○			
	바. 패소사건 응소 및 종결						
	(1) 민사(가합 : 주요사건)	기안				○	

	(2) 민사(가단, 가합, 가소)	기안		○			
	(3) 행정	기안		○			
	사. 사고장 및 사고이유서 제출	기안		○			
	아. 반소의 결정	기안			○		
	자. 신청사건처리 및 보고	기안		○			
	차. 소송진행사항 보고	기안		○			
51.	행정심판						
	가. 행정심판청구 접수	기안		○			
	나. 행정심판 수행자 지정	기안		○			
	다. 행정심판 답변서 제출	기안		○			
	라. 협의, 의견조회, 자료수집	기안	○				
52.	법률 고문변호사 운영	기안					○
53.	납세자보호관 운영						
	가. 납세자보호관 운영 계획수립	기안			○		
	나.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기안		○			
	다.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	기안		○			
	라. 납세자권리헌장 제·개정	기안					○
	마.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기안		○			
	바. 기한의 연장, 가산세감면, 징수 유예, 체납처분유예	기안		○			

별표 1 “법무감사실”을 “감사실”로 하고, 그 단위사무 중 제22호부터 제33호까지를 삭제한다.

별표 1 “홍보체육실”을 “홍보미디어실”로 하고, 그 단위사무 중 제46호부터 제51호까지를 삭제한다.

별표 1 미래사업추진단의 단위사무 중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 제9호와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서명	단위사무명	담당자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실무급	담당급				
미래사업추진단	9. 구청장 공약사항						
	가.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상황 관리	기안		○			
	나.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상황 결과보고	기안					○
	10. 시설관리공단 설립전 대행사업 최적화						
	방안 수립						
	가. 중요 결정사항	기안					○
	나. 일반사항	기안		○			

별표1 “문화관광과”를 “문화관광체육과”로 하고, 그 단위사무 중 제16호를 삭제하고, 제17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제16호부터 제21호까지로 하며, 제22호부터 제2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서명	단위사무명	담당자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실무급	담당급				
문화관광체육과	22. 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						
	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기안	○			
	나. 생활체육 진흥 종합계획수립	기안		○			
	다. 생활체육 진흥 각종 생활체육 대회	기안		○			
	라. 생활체육 진흥 각종 생활체육교실 운영	기안		○			
	마. 중요한 사항		기안			○	
	바. 경미한 사항	기안	○				
	23. 생활체육 관련사항						
	가.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기안		○			
	나. 관련단체 육성 및 지원 (민간단체)	기안		○			
	다. 관련단체 운영 및 관리 (정액단체)	기안		○			
	라.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 및 지도 관리	기안		○			
	24. 체육시설에 관한사항						
	가. 체육시설업 신고	기안		○			
	나.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기안		○			
	다. 행정처분	기안		○			
	라. 지도 관리	기안		○			
	25. 동력수상레저기구에 관한 사항						
	가.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기안		○			
	나. 동력수상레저기구 변경사항 등록	기안		○			
	다. 동력수상레저기구 구조 등 변경승인	기안		○			
	라.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 열람·발급	기안	○				
	마. 동력수상레저기구 압류등록	기안		○			
	바.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기안	○				
	사.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 재발급	기안	○				
	아. 과태료 부과	기안		○			
	26. 건전생활 관련시설						
	가. 관련시설 개발 및 설치	기안		○			
	나. 관리 및 지도	기안		○			
	27. 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기안		○			

별표1 평생교육과의 단위사무 중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서명	단위사무명	담당자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실무급	담당급				
평생교육과	24. 구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운영 가. 구립도서관 기본계획 수립 나. 구립도서관 운영 및 관리 다.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기안 기안 기안		 ○ ○			○

별표1 “차량민원과”를 “대중교통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용]

부서별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기타 문제점		
부서별(실·과) 의견			
협의개요	실·과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